

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30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 이유

- 개별법(하천법, 산림법, 전염병예방법, 경범죄처벌법등)에 따라 처리가능한 일부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함.
- 조례명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 수정

주요 골자

- 제6조(행위의 허가 및 제한), 제7조(허가취소), 제8조(권리양도의 제한), 제12조(입장거절 및 퇴장)의 폐지

개정 근거

- 행정규제사무의 정비
-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

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6조 내지 제8조”를 삭제하고, “제9조 내지 제11조”를 “제6조 내지 제8조”로 한다

“제12조”를 삭제하고, “제13조 내지 제17조”를 “제9조 내지 제13조”로 한다

제6조제2항·제7조제1호 및 제12조 본문중 “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”를 “거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”로 한다.

제9조 본문중 “단서 조항”을 삭제한다

[별 표1] 제목 수수료의 요율표“(제9조 제2항 관련)”를 “(제6조 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

[별지 제1호] 및 [제2호 서식] 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 (생략) 제12조 (입장거절 및 퇴장)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염병 질환자 2.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.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4.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 하는자 5.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<p>제13조 (수수료의 환불)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<u>다만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제14조 (생략) 제15조 (생략) 제16조 (준용)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거창군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</u>를 준용한다.</p> <p>제17조 (생략)</p> <p>【별표1】 수수료의 <u>요율표(제9조제2항 관련)</u></p> <p>【별지 제1호 서식】 자연발생유원지 사용허가 신청서</p> <p>【별지 제2호 서식】 자연발생유원지 사용 허가서</p>	<p>제8조 (현행과 같음) 제12조 <삭 제></p> <p>제9조(수수료의 환불)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<이하삭제>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>제10조 (현행과 같음) 제11조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준용)----- -----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-----</p> <p>제13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【별표1】 수수료의 <u>요율표(제6조제2항 관련)</u></p> <p>【별지 제1호 서식】 <삭제></p> <p>【별지 제2호 서식】 <삭제></p>